



의안번호	제 6 호
보 고 연 월 일	2009. 11. 24. (제 43 회)

보
고
사
항

汎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기 획 재 정 부 장 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농 촌 진 흥 청 장 중 소 기 업 청 장 기 상 청 장	윤증현 이달곤 장태평 전재희 정종환 김재수 홍석우 전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 식 경 제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소 방 방 재 청 장 산 립 청 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안병만 유인촌 최경환 이만의 박연수 정광수 윤여표
제출년월일	2009. 11. 24.			

1. 보고이유

제28회 국과위('08.8.12)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수요자인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 개선실적을 파악해 '09.12월 국과위에 보고기로 함

2. 주요내용

가. 점검대상

- 13개 R&D 중앙행정기관 상대로 7개 개선사항*에 대해 점검

* 연구비 비목 단순화, 학생인건비 풀링제, 연구결과 소유권, 기술료 제도, 대응자금 가점 폐지, 샘플정산 도입, 참여제한 강화

※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관/사업 특성상 점검 대상에서 제외

나. 점검결과

- 13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소관 규정 개정 완료, 3개 기관 미개정

* (개 정)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기상청

* (미개정)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 소관 규정 개정기관 중에도 일부 사항은 반영 정도가 미흡

* 학생인건비 풀링제, 대응자금 가점 폐지, 샘플정산 등이 가장 미흡

다. 향후계획

- 반영 미흡 사항 재정비/일괄 정비 추진('10년 상반기)

- 지속적인 추가 제도개선 발굴·추진(중장기)

3. 참고사항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협의 완료

汎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2009. 11. 2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배경 및 경위	1
II. 제도개선 주요내용	2
III. 기관별 제도개선 후속조치 실적	3
IV. 향후계획	9

붙 임 : 1. 13개 기관별 소관 규정 개정 실적
2. 기관별 후속조치 제도개선 실적 종합표

I. 배경 및 경위

□ 점검 배경

- 제28회 국과위('08.8.12)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전반을 수요자인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 개선실적을 파악해 '09.12월 국과위에 보고기로 함

□ 그간 경위

- '연구자 친화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편방안*' 수립
*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보고('08.4.2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8.5.27) 및 시행규칙('08.7.8) 개정
-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수렴('08.6~7월)
* 연구자 관심사항에 대한 개선 미흡으로 연구현장 체감을 저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08.8.12) 심의·의결(15개 부처 합동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8.12.31) 및 시행규칙('09.3.23) 개정
- 관계 기관에 규정 개정 통보 및 후속 개정 요청('09.1.6)
- 제도개선 사항 조기정착 지원 위한 후속 조치(지속중)
* 산·학·연 연구자 대상 집중홍보 실시('09.1~2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배포('09.6.26, 475개 기관, 2,500부)
* 'R&D 도우미 센터' 운영('09.4.28~), 'R&D 현장 지원단' 운영('09.6.16~)

□ 점검 대상분야

- 13개 R&D 중앙행정기관 상대로 7개 개선사항*에 대해 점검
* 연구비 비목 단순화, 학생인건비 풀링제, 연구결과 소유권, 기술료 제도, 대응자금 가점 폐지, 샘플정산 도입, 참여제한 강화
※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관/사업 특성상 점검 대상에서 제외

II. 제도개선 주요내용

- **(연구비목 구조개편)** 연구비 집행·관리의 경직성 해소 및 효율성 제고
 - * 연구비목 통합·단순화(4비목 15세목 → 4비목 7세목),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
- **(사업관리 절차 개선)** 불필요한 연구관리 규제 철폐 및 행정부담 경감
 - *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응자금 가점제 폐지 등
- **(소유권·기술료 제도 개선)** 연구결과의 기술사업화를 제약하는 제도 개선
 - * 지식재산권 공유제의 단독소유제 전환, 비영리법인 기술료 정부반납 폐지 등
- **(연구 자율성·책임성 강화)** 연구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 * 정산제도 개선(전수정산→표본정산), 연구비 유용시 참여제한 기간 확대(3년→5년)

< 제도개선 주요내용 전후 비교표 >

구분	개선사항	2008년	2009년
1	비목단순화	○ 4비목 15 세목	○ 4비목 7 세목
2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	○ 참여연구원 실명, 참여율·지급액을 사전 결정하여 기재	○ 참여연구원을 man-month 총량으로 계상
3	연구결과 소유권 합리화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 공동소유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외 소유권 불인정	○ 주관연구기관: 단독 소유 * 참여기업에 우선실사권 부여 ○ 협동연구기관: 소유권 관련, 주관연구기관의 지위 부여 ○ 공동·위탁연구기관: 협약에 따라 공동 소유 또는 단독 소유 가능 ○ 연구개발자: 연구기관의 소유권 포기시 개인명의 소유 인정
4	기술료 제도 개선	○ 대학: 정부반납 면제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20%이상 ○ 영리기관: 30%이상	○ 비영리기관: 정부반납 면제 ○ 영리기관: 30%이상
5	대응자금 가점제 폐지		○ 연구과제 선정시 비영리기관에 대한 대응자금 가점 부여 금지
6	정산 간소화	○ 연구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미흡시 정밀정산(2차정산) 실시	○ 정산과 평가를 분리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2차정산 실시(샘플정산)
7	제재조치 강화	○ 출연금 용도 외 사용시 3년간 참여제한 ○ 연구결과 해외 누설·유출시 2년간 참여제한	○ 출연금 용도 외 사용시 5년간 참여제한 ○ 연구결과 해외 누설·유출시 5년간 참여제한

Ⅲ. 기관별 제도개선 후속조치 실적

□ 13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소관 규정 개정 완료, 3개 기관 미개정

* (개 정)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기상청

* (미개정)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 개정 기관 중에도 일부 사항은 반영 정도가 미흡

* 학생인건비 폴링제, 대응자금 가점 폐지, 샘플정산 등이 가장 미흡

< 기관별 제도개선 후속조치 실적표 >

개정 여부*	행정 기관	연구비목 단순화	학생인건비 폴링제 도입	연구결과 소유권 합리화	기술료 제도 개선	대응자금 가점제 폐지	샘플정산제 도입	참여제한 강화
개정 완료	교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및 시행규칙 원용 + 위임사항 구체화						
		○	○	○	○	○	○	○
	행안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및 시행규칙 원용 + 위임사항 구체화						
		○	×	○	○	○	○	○
	문체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규정 준용						
		○	○	○	○	○	×	○
	지경부	○	○	○	○	해당없음	×	○
	복지부	○	×	○	○	○	△	○
	농식품부	○	○	×	○	해당없음	×	×
	환경부	○	○	○	○	×	×	○
	국토부	○	○	○	△	○	×	×
	중기청	○	×	△ ※ 개인명의 소유권 불인정	×	해당없음	×	○
	기상청**	○	○	△ ※ 개인명의 소유권 불인정	×	해당없음	○	×
미개정	소방청	×	×	×	×	×	×	×
	농진청	×	×	×	×	×	×	×
	산림청	×	×	×	×	×	×	×

* 개정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08.12.31) 이후 소관 규정 개정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08.5.27) 내용만 일부 반영

※ △ : 개정중 또는 일부만 개정한 사항

IV. 향후계획

◇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통일성 있는 추가 정비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100대 국정과제 중 72번 과제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 : '10년 상반기]

- ☐ 연구현장의 편의성 제고 위해 잔여 후속조치 완료
 - (개정기관) 미정비 사항 중심으로 재정비
 - * 재정비 추진시 기관별/사업별 특성 고려
 - (미개정기관) 소관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
- ☐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위해 연구현장 의견 수렴·반영
 - 시행격차* 발생요인 등 파악 통해 수시 환류(feed back)
 - * 당초 제도개선 취지·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추가 제도개선 추진 : 중장기]

- ☐ 연구비 카드 제도
 - 연구비 카드 사용범위 확대 및 활용률 제고* 방안, 연구현장 및 관련 업체의 요구사항 검토, 관련 시스템 표준화 검토 등 추진
 - * 현재 연구비 카드 사용액의 7%를 국고로 환수(cash back) 중
- ☐ 기술료 제도
 - 기술료 제도 존치 여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제도의 단순화, 합리적인 징수방안 등을 연구자/연구기관 입장에서 검토 추진
-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기재부 주관)
 - R&D 사업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되고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
 - * 현재는 건설·토목공사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중
- ☐ 간접비 제도
 - 회계연도와 일치 방안 검토, 산출·고시 기간 변경 등 개선안 도출

13개 기관별 소관 규정 개정 실적

부·청	개정 대상 규정	개정 일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09.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08.12.3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09.3.17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농림수산물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009.3.6 2008.10.29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008.12.29 2009.1.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2009.8.25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전문	2009.8.18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009.2.11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08.7.2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공동연구사업	2008.4.3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08.9.3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2008.12.29 2009.1.9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09.8.21

기관별 제도개선 후속조치 실적 종합표

구분	연구비목 단순화	학생인건비 풀링제	연구결과 소유권	기술료제도
공동관리 규정	별표 2	별표 2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제19조(기술료의 사용)
교과부	공동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 구체화			
	○ 별표 1	○ 별표 1	○ 제2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제32조(기술료)
행안부	공동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 구체화			
	○ 별표 1	× 별표 1	○ 제2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제31조(기술료)
문체부	공동관리 규정과 거의 동일			
	○ 별표 2	○ 별표 2	○ 제32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 제35조(기술료의 사용 등)
지경부	○ 별표 1	○ 별표 1	○ 제30조(성과물의 귀속 등)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5조(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
복지부	○ 별표2	× 별표2	○ 제24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제29조(기술료의 사용)
농식품부	○ 별표3	○ ※별표3	× 제2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 제34조(기술료 사용)

구분	연구비목 단순화	학생인건비 풀링제	연구결과 소유권	기술료제도
환경부	○ 별표1	○ 별표1	○ (제38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제35조(기술료의 징수)
국토부	○ 별표2	○ -제32조(연구 개발비의 잔액처리) -별표2	○ 제3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 제44조(기술료의 징수) 별표4
중기청	○ 별표1	× 별표1	△ 제30조(기술개발성과 물의 귀속) -개인명의 소유권 불인정	△ 제34조(기술료의 징수)
소방청	× 별표2	× 별표2	×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제39조(기술료의 사용)
농진청	× 연구비산정· 사용·관리 및 정산지침 (2007.12) 별표1	× 연구비산정· 사용·관리 및 정산지침 (2007.12) 별표1	× 제29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 제26조(기술료의 사용)
산림청	× 별표2	× 별표2	× 제4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제43조(기술료 사용)
기상청	○ 별표1	○ 별표1	△ -제39조(연구개발비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개인명의 소유권 불인정	× 제36조(기술료 징수)

구분	대응자금가점폐지	샘플정산 도입	참여제한 강화
공동관리 규정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1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교과부	공동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 구체화		
	○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 공동관리 규정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행안부	공동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 구체화		
	○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제2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 공동관리 규정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문체부	공동관리 규정과 거의 동일		
	○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등)	× 제2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 제39조(제재조치)
지경부	해당없음	× 제2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제3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복지부	○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제1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 제3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농식품부	해당없음	× 제3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 제31조(위반사항에 대한제재)

구분	대응자금가점 폐지	샘플정산 도입	참여제한 강화
환경부	해당없음	× 제30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 별표3
국토부	○ 제21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 제3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 제4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중기청	해당없음	× 제2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별표3
소방청	×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 제44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농진청	× 제11조(과제의 협의 및 선정)	× 제17조(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 제5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산림청	× 제15조(연구수요조사 및 과제선정)	× 제3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 제48조(위반사항의 제재)
기상청	해당없음	○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전략과	
담당자	최 윤 익
연락처	전 화 : 02-2100-6625 E-mail : kihyun3734@mest.go.kr